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대방”을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으로 한다.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을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특허청장”으로,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을 “도서·벽지 등 교통”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35조 단서 중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을 “심결”로 한다.

제42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거절이유통지에 대한”을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제51조제3항 단서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136조제4항”을 “제136조제5항”으로, “제133조의2제

4항”을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65조제6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66조의2의 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을 “(직권보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을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특허를”을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 결정이나 특허를”로 한다.

제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8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거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원(原)특허권자”를 “원특허권자”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6 및 제132조의17로 한다.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분을 특허권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 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 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16(종전의 제132조의2)제1항 중 “특허·실용신안”을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3조의2제1항 후단 중 “증거서류를 제출”을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

1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6조제9항”을 “제136조제11항”으로, “제136조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을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33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제133조의2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36조제4항”을 “제13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제136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단서 중 “특허”를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2조의3제

1항, 제1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33조의2제4항”을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제4항 전단 중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3호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제135조”를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각하)”를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을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로 한다.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을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로, “다른”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로 한다.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0조제1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로 한다.

제180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을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결”을 각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제18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심결”을 각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2조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중 “심판규정”을 “심판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심판에”를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로, “심판의”를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를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판이나”를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판”을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으로, “심결”을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로 한다.

제187조 단서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0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4조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15조 중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6항”을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7항”으로 한다.

제216조제1항 중 “특허 또는 심판”을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으로, “신청”을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제2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특허취소신청·심판”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1항 중 “심판”을 “특허취소신청·심판”으로 한다.

제222조 중 “심판”을 “특허취소신청, 심판”으로 한다.

제2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의2제1항 중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를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로 한다.

제227조제2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229조 중 “연장등록”을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후단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7항 및 제201조 제7항(제21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



례) 제170조제1항(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생 략)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u>상대방</u>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32조의2</u>에 따른 <u>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u>-----.</p>
<p>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u>출원심사의 청구인</u>,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p>	<p>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                      -----                      ----- <u>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u>-----                      -----.</p>
<p>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대리권의 범위) -----                      -----                      -----                      -----                      -----                      -----.</p>
<p>1. ~ 6.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p>

7.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생략)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생략)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7. 제132조의17-----

8. (현행과 같음)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  
-----  
-----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2조의17-----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 제132조  
의17-----  
-----  
-----  
----- 도서·벽지  
등 교통-----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관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 ⑥ (생략)

<신설>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  
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  
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  
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  
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  
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  
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  
견서 제출기간

-----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  
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  
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  
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  
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  
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  
-----





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 1. (생략)
-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  
제132조의17-----  
-----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

제52조(분할출원) ①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 제132조의17-----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② ~ ⑥ (생략)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생략)

② ~ ⑧ (생략)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② (생략)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변경출원) ① -----  
-----  
-----  
-----  
-----  
-----  
-----  
-----  
-----  
-----  
-----

1. -----  
-----  
-----  
-----  
-----  
-----  
제132조의17-----  
-----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②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생략)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

는 제3호-----  
-----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년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

⑤ (생략)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

-----  
-----  
-----  
----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

--- 제132조의17 ---

--- 제132조의17 ---



② ~ ④ (생략)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생략)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② (생략)

③ 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  
-----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② (생략)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주소 및 특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

④ (생략)

⑤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신 설>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

-----  
-----  
-----  
-----  
-----  
-----  
-----  
-----  
-----  
-----  
-----  
-----  
-----  
-----  
-----  
-----  
-----  
-----  
-----  
-----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 5. (생략)

② (생략)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  
-----  
-----

----- 원특허권자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 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 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  
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신 설>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신 설>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  
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  
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  
다.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  
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  
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

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  
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  
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  
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  
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  
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  
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  
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

<신 설>

<신 설>

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 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신 설>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

<신 설>

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신 설>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신 설>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

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

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

<신 설>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①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 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132조의3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

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

· 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 · 실용신안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17 (현행 제132조의3과

같음)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

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



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제13항까지-----  
-----.

----- 제136조제11항 -----  
-----  
-----  
-----  
-----  
-----  
-----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  
-----.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⑥ -----  
-----  
-----  
-----  
----- 제136조제5항 -----  
-----.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 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제136조(정정심판) ①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  
-----  
-----  
-----  
-----  
-----  
-----  
-----

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⑤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  
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무효(제  
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  
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⑦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  
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  
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2. 제3항-----  
---

3. 제4항 또는 제5항-----  
---

⑦ -----  
-----  
----- 특허취소결정이 확  
정되거나 특허-----  
-----  
-----  
---

⑧ -----  
-----  
-----  
-----  
-----  
-----  
-----  
-----  
-----  
-----  
-----

----- . 다만, 특허권자가 정  
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  
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  
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⑧ ~ ⑩ (생략)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다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 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⑩ ~ ⑫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⑬ ----- 제12항에 -----  
-----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  
-----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⑤ (생략)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  
-----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  
-----  
-----  
---- 제135조제1항·제2항----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3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 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3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① (생략)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제135조제1항·제2항-----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

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생략)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6.·7. (생략)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  
-----  
-----  
-----.

1. -----  
-----  
--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  
취소신청인-----
2. ----- 당사자, 참  
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  
-----
3. ----- 당사자, 참  
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  
-----
4. (현행과 같음)
5. ----- 당사자, 참  
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  
-----
- 6.·7. (현행과 같음)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  
-----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  
----- 특허취소신청  
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  
-----.

② ----- 필요하

면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65조(심판비용) ①·② (생략)

③ 제132조의3,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 ⑦ (생략)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② (생략)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심판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2조의17-----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  
-----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  
----- 제132조의17-----  
-----  
-----.

② (현행과 같음)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① -----제132조의17-----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  
-----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

② (현행과 같음)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  
-----.

② -----  
-----  
-----  
-----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④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

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

- 1. ~ 3. (현행과 같음)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  
-----  
-----.

- 1.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 2.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

-----

3. -----  
-----  
----- 특허취  
소결정 또는 심결-----  
-----  
-----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  
-----  
-----  
-----  
-----  
-----  
-----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  
----- 특허취  
소신청 또는 심판의 -----.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

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1. 2. (생략)

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 ⑤ (생략)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 ⑧ (생략)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 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 특허취소신청서 · 심판청구서 · 재심청구서-----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87조(피고적격) -----  
-----  
-----  
---. -----  
----- 제135조제1항  
· 제2항-----  
-----  
-----  
-----  
-----  
-----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제1항·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⑦ (생략)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제8항 -----  
-----  
-----.

⑦ (현행과 같음)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  
-----  
-----  
-----  
-----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 제3항,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 · 제4호 ·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 · 제3항, 제136조제7항-----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

-----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 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취소 신청·심판-----  
-----  
-----  
-----.

1. (현행과 같음)
2. -----  
-----  
-----특허  
취소신청·심판-----  
-----
3. -----  
-----  
-----특허  
취소신청·심판-----

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특허출원·심사·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 ⑦ (생략)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

-----

② -----특허취소  
신청·심판 -----

-----  
-----  
-----  
-----  
-----.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  
-----  
-----  
-----특허취소신청  
·심판-----

-----  
-----  
-----  
-----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  
-----  
-----특허취소신청, 심판-----

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특허표시) (생략)

<신설>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 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 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27조(위증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

-----  
-----  
-----.

제223조(특허표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

----- 특허 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  
-----.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

-----  
----- 연장등록, 특허

<p>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취소신청에 대한 결정</u> ----- ----- -----.</p>
--	--